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의견표명)**

□ **민원 제목** : 남양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조례 제5조 제5항에 규정된 잔가지 파쇄기 운반에 대한 정확한 재해석 요청

□ **신청 원인**

- 신청인은 남양주시 ○○○에서 소규모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는자로 잔가지 파쇄기를 임대했으나 소형농기계로 분류되어 운반지원을 받지 못함. 이에 파쇄기 분류 재검토와 소규모 농가의 실질적 이용을 위한 운반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함.

□ **피신청인 등의 주장**

- 신청인은 농업기계임대사업소에 유선으로 잔가지 파쇄기 배송지원을 요청하였으며, 담당 부서는 「남양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조례」 제5조 제5항에 따라 농업기계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직접 운반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음. 다만 운반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배송이 지원됨을 설명하고, 잔가지 처리와 관련한 ‘영농 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안내하였음.
- 남양주시는 임대와 수리업무를 병행 수행함에 따라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농번기에는 대형농기계 중심의 집중 운영으로 업무 부담이 큰 상황임.
- 2024년 기준 임대 2,039건 중 1,038건을 배송 처리하고 수리 1,632건을 수행하는 등 업무량이 상당하며, 배송차량 4대와 인력 10명으로 1건당 약 2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소형농기계의 개별 배송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임.

□ **사실관계**

- 「남양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조례」 제5조 제5항
 - “농업기계는 임차인이 직접 운반한다. 다만, 운반이 곤란한 농업기계와 대형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직접 운반한다”<신설 2023. 9. 26.>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르면 농업기계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크기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음.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르면 농업기계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크기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음.
- 남양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이용안내서에 임대농업기계 배송 서비스 대상도 “대형농기계 또는 1톤 트럭에 실을 수 없는 농기계”로 규정하고 있음.
- 2025년 영농 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에는 아래와 같이 사업 신청을 받고 있음.
 - 모집기간 : 2025년 3월(상반기), 10월(하반기)
 - 대상작목

월별	영농부산물 처리 품목	작업 내용	비고
상반기	1월	포도, 복숭아 가지	과수 전정가지 파쇄
	2월	사과, 배 가지	과수 전정가지 파쇄
	3월	전 품목 대상(잔량 처리)	영농부산물 전량 파쇄
하반기	11월	땅콩, 참깨, 들깨, 콩	두류·특용작물 파쇄
	12월	고추, 고구마, 옥수수	밭작물 파쇄

- 사업대상 : 관내 농업인
 - 1순위 : 장애인, 여성농업인(농업경영체 경영주 기준, 경영주 외 농업인 X)
 - 2순위 : 고령농업인(1960.12.31. 이전 출생자)
 - 3순위 : 일반 농업인

□ 관계법령 등

- 「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제5조 제5항

□ 판단 및 결론

- 「남양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조례」 제5조 제5항은 농업 기계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직접 운반하되, 운반이 곤란하거나 대형 농기계에 한해 예외적으로 배송을 허용하고 있음. 한편 관련 법령에서는 잔가지 파쇄기의 크기나 중량 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운반 곤란 여부는 장비의 구조와 운용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 농축산지원과 보유 잔가지 파쇄기는 자주식 구조로 1톤 트럭 적재가 가능하고 통상 별도의 특수장비 없이 운반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이에 따라 해당 장비는 '운반이 곤란한 농기계'로 보기에선 제한이 있으며,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직접 운반해야 하는 대상으로 해석됨.
- 한편 조례 개정으로 배송 대상이 축소되면서 이용 농업인의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관련 기준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필요함. 아울러 소규모 농가 및 여성 농업인을 우선 지원하는 영농부산물 파쇄사업을 적극 안내하고, 장기적으로는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마련이 요구됨.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의견표명)

□ 민원 제목 : 남양주시 체육시설(테니스장) 이용 관련 고충민원

□ 신청 원인

- 신청인은 남양주시 공공 테니스장이 특정 동호회에 편중 배정되어 일반 이용이 제한되고, 차별 금지 지적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함. 시는 전용 코트 확충을 제시했으나 근본 대안이 아니라며 공정한 이용 보장을 위한 ombudsman 조사를 요청함.

□ 피신청인 등의 주장

-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진흥법」 제6조(생활체육 진흥 기본 계획 수립 등) 및 제10조(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규정을 근거로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아울러, 체육시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각 행정복지센터와의 정담회를 통해 운영상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일반 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인 전용 코트를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개인 이용자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임.

□ 사실관계

- 「생활체육진흥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제6조(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 제2항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호: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0조(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시행령 제2조(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3호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제2조(정의) “체육행사”라 함은 공인 체육경기, 사회공익을 위한 체육경기 및 국제경기와 체육관련 활동(「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단체의 활동)을 말한다.
 1. 국가, 도 또는 시의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5. 직장 및 동호회 등 단체가 참여하는 체육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행사 등
 8. 그 밖에 시장이 허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 관계법령 등

- 「생활체육진흥법」 제6조
- 「생활체육진흥법」 제10조
-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
-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

□ 판단 및 결론

- 「생활체육진흥법」 및 시행령은 체육동호인 조직의 육성·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해 동호회에 체육시설 사용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음. 이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운영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다만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동호회는 일반적으로 다수의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용 빈도 또한 개인 이용자 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고려하면 개인과 동호회를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하거나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공공체육시설 이용 실태에 대해 각 행정복지센터별로 현재 운영 방식과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인 이용자의 사용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등록된 체육동호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용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